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2-117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. 11. 28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14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수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</p>	<p>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</p>